

한국젠더법학회 학회지 심사규정

제정	2007년 1월 13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2년 6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젠더법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젠더법학(Korean Journal of Gender and Law)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한 전문 논문집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젠더법학 투고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1.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중요성
2. 연구 관점의 참신성 및 여성주의적 관점의 반영도
3. 문제 제기의 명료성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내용의 논리성
5. 연구 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문적인 기여도

제3조(심사결과 판정)

- ①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가(경미한 보완 포함)',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③ 최종결과 판정 및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결과의 확정과 편집위원회의 추후조치)

- ①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이하와 같이 판정한다.

게재 개(경미한 사항 보완 포함)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판정
3			게재 적합
2	1		게재 적합
1	2		게재 적합
	3		재심사
2		1	재심사
1	1	1	재심사
	2	1	재심사
1		2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3	게재 불가

- ② 판정 결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추가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재심에 회부한다. 만약 추가심사위원도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다.
- ③ 편집위원장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집필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집필자가 해당 논문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차호 젠더법학의 게재대상논문으로 심사할 수 있다.
- ④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기초로 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수정 제안을 할 수 있고, 심사취지의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서를 익명성의 보장 하에서 심사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⑥ 집필자가 심사의견이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나 심사 종료 시에도 심사위원, 논문제출자 등을 익명으로 하며, 심사평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 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동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